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7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박기재,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소영, 김제리,
김호진, 김화숙, 문병훈,
오한아, 이영실, 조상호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장애인 대상 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처럼 재발하는 학대 상황을 방지하고자,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사후관리에 관한 참여의무를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1.8)되었음.
- 이에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제3항제2호)

나.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제3항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
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3.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② (생략)</p> <p>③ 기관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 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생략)</p> <p>2. <u>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u></p> <p><신설></p> <p>3. ~ 5. (생략)</p>	<p>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u></p> <p>3. <u>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u></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문서번호

2021101200000066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12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기추진 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서울시 복지정책실 기추진사업 2021년 예산 652백만원(국비73백만원, 시비579백만원)(붙임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33,500천원으로 연평균 6,7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비용은 성북구 피해장애인 쉼터사업 참고하여 추계
 -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은 서울시 유사사업을 준용하고 교육은 1년에 1회 시행하는것으로 가정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33,500천원
 - 총 비용 = 장애인 학대행위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장애인 학대행위자 교육비+장애인 학대행위자 의료적·치료비용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 (a)	-	-	-	-	-	-
세출	제10조의2제3항제2호 (장애인 학대행위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제10조의2제3항제2호 (장애인 학대행위자 교육비)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제10조의2제3항제2호 (장애인 학대행위자 의료적 치료비용)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소계 (b)	6,700	6,700	6,700	6,700	6,700	33,500
총비용(b-a)		6,700	6,700	6,700	6,700	6,700	33,500

○ 장애인 학대행위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 ≍ 12,000천원
= 200천원 × 12개월 × 5년

※성북 피해장애인 쉼터 심리상담 및 치료비 200천원

○ 장애인 학대행위자 교육비 ≍ 12,500천원
= 2,500천원 × 5년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1회당 2,500천원

○ 장애인 학대행위자 의료적 치료비용 ≍ 9,000천원
= 150천원 × 12개월 × 5년

※성북 피해장애인 쉼터 병원비 및 약제비 15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무관 이혜린

☎ 02-2180-7955

e-mail : lovelyynn91@seoul.go.kr